|  |  |  |
| --- | --- | --- |
| **일정기간 내 특정 엄중신용불량자의 민간항공기 탑승 제한을 통해 사회신용체계 구축을 촉진할 것에 관한 의견**  발개재금[2018]385호  각 성•자치구•직할시 및 신장(新疆)생산건설병단의 사회신용체계 구축 사업 선도기관, 정신문명건설위원회판공실, 고급인민법원, 재정청(국), 인력자원사회보장청(국),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산하 각 파출기구, 중국민간항공국 산하 각 지역 관리국, 각 항공운송(범용)회사, 공항운영회사, 중국민간항공정보그룹, 공항 공안국 :  시진핑(習近平)의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과 중국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의 취지를 심도있게 습득 및 관철하고 '한번 신용을 잃으면 어디서나 제한을 받는(一處失信, 處處受限)' 신용불량자 징계 구도 구축에 관한 시진핑(習近平) 총서기의 중요지시를 실행하며 <신용양호자 연합장려 및 신용불량자 연합징계 제도를 구축 및 완비하고 사회신용체계 구축을 가속화 추진할 것에 관한 국무원의 지도의견>(국발[2016]33호)의 요구에 따라 일부 여객의 위법행위가 민간항공기 비행안전에 미칠 수 있는 불리한 영향을 예방하고 기타 분야에서의 심각한 신용상실 행위에 대한 징계 수위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 엄중신용불량자의 민간항공기 탑승 제한에 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 제한범위  (1) 여객이 공항 또는 항공기 내에서 다음의 행위를 실시함으로써 공안기관에 의해 행정처벌을 받았거나 형사책임을 추궁당한 경우.  ① 민간항공의 보안과 관련된 허위 테러 정보를 조작하거나 고의적으로 전파하는 경우;  ② 항공기 탑승 신분증 또는 탑승권을 위조, 변조 또는 도용하는 경우;  ③ 탑승수속 카운터, 보안검색 통로, 탑승구(통로)를 막거나 강제로 점거하거나 충격하는 경우;  ④ 국가의 법률•법규에 규정된 위험물품, 금지물품 및 규제물품을 신변에 휴대하거나 탁송하는 경우; 휴대물품 또는 탁송물품에 국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민간항공 운송 금지•제한 물품을 고의적으로 숨겨둔 경우;  ⑤ 항공기에 강제적으로 탑승하여 항공기를 점거하거나 항공기를 요격하거나 항공기 조종실, 활주로 및 에이프런에 무단 진입하거나 항공기 조종실, 활주로 및 에이프런을 충격하는 경우;  ⑥ 스스로 또는 타인을 선동하여 항공기 승무원, 보안검색요원, 탑승수속사무원 등 민간항공 직원의 직무수행을 방해하거나 인신공격을 실시하거나 인신공격 위협을 가하는 경우;  ⑦ 좌석•선반을 무단 점유하거나 폭행 또는 행패를 부리거나 항공기 또는 항공시설•설비를 고의적으로 훼손, 절도, 무단 가동하는 등 항공기 내 질서를 교란하는 경우;  ⑧ 제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항공기 내에서 화염을 사용하거나 흡연하거나 규정을 어기고 전자설비를 사용하는 경우;  ⑨ 항공기 내에서 타인의 물품을 절도하는 경우.  (2) 기타 분야의 심각한 신용상실 행위와 관련된 책임자  ① 이행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거부한 중대 조세위법사건 당사자;  ② 재정자금 관리•사용 분야에서 조작, 허위보고, 타인 명의를 사칭하여 수령, 사취, 억류, 유용, 국제금융조직 및 외국정부를 채권자로 한 만기도래 채무 불이행 등 심각한 신용상실 행위의 책임자;  ③ 사회보험 분야에서 다음의 심각한 신용상실 행위를 행한 책임자 : 고용주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한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고용주가 사회보험료 납부기수(基數)를 성실하게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한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의무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를 거부하는 경우; 사회보험기금을 은닉, 도피, 점용, 유용하거나 규정을 어기고 투자•운영하는 경우; 사기, 증명서류 위조 또는 기타 수단으로 사회보험금을 사취하는 경우; 사회보험서비스기구가 서비스계약 또는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사회보험행정부서의 사고•문제 조사에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  ④ 증권•선물 관련 법률 위반으로 벌금•몰수금 처벌이 내려진 후 기한이 경과될 때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장회사의 관련 책임주체가 기한이 경과될 때까지 공개승낙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⑤ 인민법원에 의해 관련 규정과 법에 따라 소비제한 조치가 취해졌거나 법에 의거하여 신용불량피집행인 명단에 추가된 경우;  ⑥ 관련부서가 인정하는 기타 민간항공기 탑승 제한 대상 엄중신용불량행위의 책임자로 관련부서가 이 문건에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이 문건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명확히 하여야 한다.  2. 정보 수집  (1) 민간항공 여객 신용불량 정보의 수집  중국민간항공국은 공안기관, 인민법원과 조율하여 정보 제공 매커니즘을 구축하여야 한다. 이 의견 제1부분 제(1)호에 나열된 행위로 인하여 공안기관에 의해 처벌을 받았거나 형사책임을 추궁당한 자의 경우 처벌결정을 내린 공안기관과 판결을 내린 인민법원이 해당 명단을 중국민간한공국에 제공한 후 중국민간항공국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항공기탑승제한자 명단에 추가한다.  (2) 기타 분야의 신용불량 관련 정보의 수집  국가발전개혁위, 최고인민법원, 재정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세무총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심각한 신용상실 행위로 인하여 본 부서에 의해 항공기 탑승 제한 대상으로 확정된 자의 명단을 전국신용정보공유플랫폼으로 전송하여야 하며 플랫폼이 명단을 취합하여 중국민간항공국으로 전송한 후 중국민간항공국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항공기탑승제한자 명단에 추가한다. 이 의견이 실시되기 전에 이미 중국민간항공국과 데이터 전송 채널을 구축하여 명단 정보에 대한 공유가 이뤄지고 있을 경우 기존 데이터 전송 채널과 정보 공유 방식을 유지할 수 있으며 전국신용정보공유플랫폼은 명단 정보를 중복적으로 전송하지 아니한다.  중국민간항공국에 제공되는 명단 정보에는 항공기탑승제한자 명단에 추가되는 자의 성명, 여행증명서 번호, 추가사유가 포함되어야 하며 근거로 삼은 법률문서가 있을 경우 해당 법률문서의 명칭과 번호도 포함되어야 한다. 관련 부서는 명단이의처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중국민간항공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3. 발표, 집행 및 권리구제  중국민간항공국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매월 첫번째 근무일에 지정된 민간항공 웹사이트와 신용 조회 사이트 '크레딧 차이나'에 항공기탑승제한자 명단 정보를 발표하여야 하며 이의처리 담당부서와 연락방식도 동시에 공포하여야 한다. 명단 발표일로부터 7일(근무일 기준)을 공시기간으로 하며 공시기간 내에 피공시인은 유관부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공시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피공시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피공시인이 제기한 이의가 심사를 거쳐 기각된 경우 명단을 집행하기 시작한다. 착오로 인해 본인이 항공기탑승제한자 명단에 추가되었다고 인정하는 자는 유관기관•조직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4. 제거제도  특정 엄중신용불량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내 민간항공기 탑승을 적당히 제한한다. 관련 주체가 항공기탑승제한자 명단에서 제거된 후 그에 대하여 더 이상 항공기 탑승 제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다. 항공기탑승제한자 명단에서 제거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민간항공의 비행안전과 생산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한 특정 엄중신용불량자에 대한 민간항공기 탑승 제한 조치는 1년간 유효하고 공시기간 만료일로부터 기산하며 1년이 만료되는 시점에 자동적으로 명단에서 제거된다.  (2) 기타 분야의 민간항공기 탑승 제한 대상자 명단은 1년간 유효하고 공시기간 만료일부터 기산하며 1년이 만료되는 시점에 자동적으로 명단에서 제거된다. 유효기간 내에 그가 법정의무를 이행완료한 경우 유관기관은 7일(근무일 기준) 내에 중국민간항공국에 통보하여 명단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범죄용의자 또는 범인 압송을 위하여 항공기 탑승이 필요한 경우 압송 담당부서가 중국민간항공국에 신청을 제출한 후 일시적으로 명단에서 제거한다.  5. 소송 지도  최고인민법원은 각 급 인민법원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여 항공기탑승제한자 명단 집행으로 인해 발생한 관련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을 적법하게 처리하고 그 심리기준을 명확히 하며 공정하게 법률을 적용함으로써 각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6. 홍보 업무  이 의견에 서명한 기관과 각 항공운송(범용)회사, 공항운영회사, 민간항공 유관 협회는 다양한 유형의 매체 플랫폼과 여론의 홍보•유도 기능을 이용하여 민간항공신용에 관한 홍보•보급 및 교육 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야 한다. '신의성실 위크 행사', '안전생산의 달', '신의성실 및 사업 활성화에 관한 홍보의 달', '3.15 국제소비자권익보호일', '6.14 신용기록 관심의 날', '12.4 전국법제선전일' 등 공익행사를 이용하여 단계적•중점적으로 민간항공기 탑승 제한 제도의 내용과 실시 상황을 안내•홍보함으로써 이 제도에 대한 사회대중의 인식을 증진시키고 사회대중이 이 제도의 실시를 감독할 수 있도록 한다.  이 통지는 2018년 5월 1일부터 실시한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중국민간항공국  중앙정신문명건설지도위원회판공실  최고인민법원  재정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세무총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2018년 3월 2일 |  | **关于在一定期限内适当限制特定严重失信人乘坐民用航空器，推动社会信用体系建设的意见**  发改财金〔2018〕385号  各省、自治区、直辖市、新疆生产建设兵团社会信用体系建设牵头单位、文明办、高级人民法院、财政厅（局）、人力资源社会保障厅（局）、国家税务局、地方税务局，中国证监会各派出机构，民航各地区管理局，各运输（通用）航空公司、机场公司，中国民航信息集团、机场公安局：  　 为深入学习贯彻习近平新时代中国特色社会主义思想和党的十九大精神，落实习近平总书记关于构建“一处失信、处处受限”信用惩戒大格局的重要指示，按照《国务院关于建立完善守信联合激励和失信联合惩戒制度加快推进社会诚信建设的指导意见》（国发〔2016〕33号）要求，防范部分旅客违法行为对民航飞行安全的不利影响，进一步加大对其他领域严重违法失信行为的惩戒力度，现就限制特定严重失信人乘坐民用航空器提出以下意见。  　　一、限制范围  　 （一）旅客在机场或航空器内实施下列行为被公安机关处以行政处罚或被追究刑事责任的  　 1.编造、故意传播涉及民航空防安全虚假恐怖信息的；  　 2.使用伪造、变造或冒用他人乘机身份证件、乘机凭证的；  　 3.堵塞、强占、冲击值机柜台、安检通道、登机口（通道）的；  　 4.随身携带或托运国家法律、法规规定的危险品、违禁品和管制物品的；在随身携带或托运行李中故意藏匿国家规定以外属于民航禁止、限制运输物品的；  5.强行登占、拦截航空器，强行闯入或冲击航空器驾驶舱、跑道和机坪的；  　 6.妨碍或煽动他人妨碍机组、安检、值机等民航工作人员履行职责，实施或威胁实施人身攻击的；  　 7.强占座位、行李架，打架斗殴、寻衅滋事，故意损坏、盗窃、擅自开启航空器或航空设施设备等扰乱客舱秩序的；  　 8.在航空器内使用明火、吸烟、违规使用电子设备，不听劝阻的；  　 9.在航空器内盗窃他人物品的。  　 （二）其他领域的严重违法失信行为有关责任人  　 1.有履行能力但拒不履行的重大税收违法案件当事人；  　 2.在财政性资金管理使用领域中存在弄虚作假、虚报冒领、骗取套取、截留挪用、拖欠国际金融组织和外国政府到期债务的严重失信行为责任人；  　 3.在社会保险领域中存在以下情形的严重失信行为责任人：用人单位未按相关规定参加社会保险且拒不整改的；用人单位未如实申报社会保险缴费基数且拒不整改的；应缴纳社会保险费且具备缴纳能力但拒不缴纳的；隐匿、转移、侵占、挪用社会保险基金或者违规投资运营的；以欺诈、伪造证明材料或者其他手段骗取社会保险待遇的；社会保险服务机构违反服务协议或相关规定的；拒绝协助社会保险行政部门对事故和问题进行调查核实的；  　 4.证券、期货违法被处以罚没款，逾期未缴纳的；上市公司相关责任主体逾期不履行公开承诺的；  　 5.被人民法院按照有关规定依法采取限制消费措施，或依法纳入失信被执行人名单的；  　 6.相关部门认定的其他限制乘坐民用航空器的严重失信行为责任人，相关部门加入本文件的，应当通过修改本文件的方式予以明确。  　 二、信息采集  　 （一）民航旅客相关失信信息采集  　 民航局应当和公安机关、人民法院协调建立信息推送机制。因本意见第一部分第（一）项所列行为而被公安机关处罚或者被追究刑事责任的，由做出处罚决定的公安机关和做出判决的人民法院将名单推送民航局，由民航局按照规定程序纳入限制乘机名单。  　 （二）其他领域相关失信信息采集  　 国家发展改革委、最高人民法院、财政部、人力资源社会保障部、税务总局、证监会将本部门确定的因发生严重失信行为需要纳入限制乘飞机的名单归集至全国信用信息共享平台，由平台推送给民航局，由其按规定程序纳入限制乘飞机名单。如果之前已和民航局建立数据传输通道的、实现名单信息共享的，可以保持原数据传统通道和信息共享方式，全国信用信息共享平台不再重复推送名单信息。  　 向民航局提供的名单信息应当包括：被列入限制乘机名单人员的姓名、旅行证件号码、列入原因，有作为依据的法律文书的，还应当提供该法律文书的名称与编号。有关部门应当确定名单异议处理人，并通报民航局。  　 三、发布执行和权利救济  　 民航局按照规定程序，每月第一个工作日在指定的民航网站和“信用中国”网站发布限制乘机名单信息，异议处理部门及联系方式应当同时公布。名单自发布之日起7个工作日为公示期，公示期内，被公示人可以向有关部门提出异议，公示期满，被公示人未提出异议或者提出异议经审查未予支持的，名单开始执行。被纳入限制乘机名单的人员认为纳入错误的，可以向有关机关、单位提起复核。  　 四、移除机制  对特定严重失信人在一定期限内适当限制乘坐民用航空器。相关主体从限制乘机人员名单中移除后，不再对其采取限制乘机措施，具体移除办法如下：  　 （一） 因严重影响民航飞行安全和生产安全的特定严重失信人限制乘坐民用航空器的，有效期为一年，自公示期满之日起计算，一年期满自动移除。  　 （二）其他领域产生的限制乘坐民用航空器的相关人员名单，有效期为一年，自公示期满之日起计算，一年期满自动移除；在有效期内，其法定义务履行完毕的，有关部门应当在7个工作日内通知民航局移除名单。  　 因押解犯罪嫌疑人或者犯罪人员需要乘坐飞机的，由押解部门向民航局提出申请后，予以暂时解除。  　 五、诉讼指导  　 最高人民法院加强对各级人民法院指导，依法处理因执行限制乘机名单而引发的有关民事诉讼和行政诉讼，明确审理标准，公正司法，维护各方合法权益。  　 六、宣传工作  　 本意见的签署单位以及各航空运输（通用）公司、机场公司、民航有关协会，应当借助各类媒体平台，发挥舆论的宣传引导作用，大力开展民航信用宣传普及教育活动。利用“诚信活动周”“安全生产月”“诚信兴商宣传月”“3•15国际消费者权益保护日”“6•14信用记录关爱日”“12•4全国法制宣传日”等公益活动，有步骤、有重点地介绍宣传限制乘坐民用航空器制度的内容和实施情况，帮助广大社会公众熟悉并监督这一制度的实施。  　 本通知自2018年5月1日起实施。  国家发展改革委  民航局  中央文明办  最高人民法院  财政部  人力资源社会保障部  税务总局  证监会  2018年3月2日 |